

<p>단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타 시립예술단체와 형평성을 고려, 창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그 동안 창단을 추진하였으나 미창단된 상태로 있었으나 금년 9월 시립극단 창단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, 단장 및 단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이르러 현재는 실질적인 창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립극단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, 창단되는 시립극단의 운영을 기존 8개 시립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영주체인 世宗文化會館長에게 권한 위임코자 하는 본 조례의改正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委員會에서 시립극단 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世宗文化會館長에게 시립극단 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本 조례의改正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.</p> <p>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長님,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, 아무쪼록 本議員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.</p> <p>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서울特別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은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,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이의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동조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</p> <p>5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.</p>	<p>6. 전시품·기타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.</p> <p>제17조의 “소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”를 제17조제1항으로 하여 “소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,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”로 한다.</p> <p>제17조제1호,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으로 하여 “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”를 신설한다.</p> <p>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.</p> <p>제19조제4호를 제19조제3호로 한다.</p> <p>제24조제2항의 “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·도록·CD·필름 등을 포함하여 외부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”를 제1항의 “소장자료는 작품·도록·CD·필름 등을 포함한다”로 한다.</p> <p>제24조제4항을 신설한다.</p> <p>4.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, 유·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총 칙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(이하 “미술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,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관 람</p> <p>제 2 조(개관 및 휴관)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     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월 1일, 1월 2일</li> <li>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휴관일</li> </ol> <p>제 3 조(관람시간)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, 11월부터 2월까지는 상오 10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---	--

<p>제 4 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신이상자</li> <li>2. 술에 취한 자</li> <li>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</li> <li>4.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</li> <li>5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</li> <li>6. 전시품,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</li> </ol> <p>제 5 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흡연 또는 음주 행위</li> <li>2. 소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활영하는 행위</li> <li>3.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</li> <li>4.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</li> <li>5. 소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</li> </ol> <p>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 6 조(관람료) ① 소장은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일반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,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규칙 제9조에 규정된 관람료를 정수한다.</p> <p>③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 (이하 “대관자”라 한다)는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람료는 대관자가 결정한다.</p> <p>제 7 조(무료관람)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빈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</li> <li>2. 7세 미만의 어린이·65세 이상의 노인·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</li> <li>3.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</li> <li>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</li> <li>5. 기타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</li> </ol>	<p>인정하는 자</p> <p>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 8 조(관람권) 전시 관람권은 적정한 관람인원의 범위내에서 소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관자가 그 종류와 금액을 정하여 발행한다.</p> <p>제 9 조(매표 및 수표)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달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. 단,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h3>제 3 장 대관 등</h3> <p>제10조(대관허가) 소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대관허가 범위)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(이하 “대관허가시설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본시설: 전시실</li> <li>2. 부속설비: 냉·난방설비 등</li> </ol> <p>제12조(사용시간) ① 미술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절기(11월~2월) 09:00~17:00</li> <li>2. 하절기(3월~10월) 09:00~18:00</li> </ol> <p>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3조(대관허가 신청)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</li> </ol>
--	--

<p>지,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)</p> <p>2. 전시의 종류와 명칭</p> <p>3.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작가 인원</p> <p>4. 대관기간(전시기간,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·철거일 포함), 대관장소 및 대관 면적</p> <p>5. 관람료</p> <p>제14조(대관허가 심사) 소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대관허가 제한)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관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</li> <li>2. 제19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</li> <li>3. 제21조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</li> <li>4. 기타 소장이 미술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ol> <p>제16조(대관료)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.</p> <p>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정수한다.</p> <p>④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유류는 정부고시가격 기준,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량요금에 의거 산출 정수한다.</p> <p>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7조(대관료감면) ① 소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,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</p>	<p>다.</p> <p>②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8조(대관허가 기간 및 장소의 변경) 소장은 미술관의 업무,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협정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제19조(대관허가의 취소)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·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</li> <li>2.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</li> <li>3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</li> </ol> <p>제20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</p> <p>제21조(손해배상 및 변상조치)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,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서비스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장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</p> <p>제22조(소장작품 구입) 소장이 미술관에 소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.</p> <p>제23조(소장작품 관리) 소장작품은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.</p> <p>제24조(소장작품 열람 등) ① 소장은 미술관</p>
--	---

<p>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·도록·CD·필름 등을 포함한다.</p> <p>③ 제1항·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, 유·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25조(작품기증) 소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장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등</p> <p>제26조(위원회)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2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</li> <li>2. 미술과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전문가</li> <li>3. 기타 시장이 미술관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 <p>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2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소장작품 구입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29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	<p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30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31조(위원회 수당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32조(주요사업 자문기구 운영) ① 소장은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제26조 내지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대관허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관허가를 받았거나 대관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③(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이 조례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중 “무용단 및 오페라단”을 “무용단·오페라단 및 극단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. 서울特別市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 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
---	--